



정 보 통 신 부

수신자 김기창 교수님

(경유)

제목 민원에 대한 답변

1. 귀하의 민원('07.4.13) 관련입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1에 대하여

o 금융결제원의 가입자 S/W도 다른 공인인증기관과 동일하게 전자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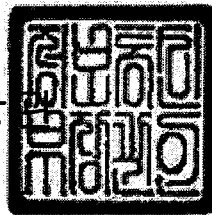
나. 질의 2에 대하여

o 일부 은행(이용자)이 자신의 고객을 위해 BIMS계열 S/W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금융결제원과 관계없이 은행(이용자)의 영업상의 자율 선택에 의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이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현행 전자서명법령에 따르면, 은행(이용자)이 공인인증기관의 S/W를 이용할지, 전문보안업체의 S/W를 이용할지는 은행(이용자)의 영업상의 자율선택 사항입니다.

다. 질의 3에 대하여

o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4조는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공인인증서 가입자와 제3자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다른 별도의 법인격 주체이고 업무상 독립적으로 운영중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업무를 제공함에 있어 은행과 제3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

정보통신부장



★서기관

김태완

정보윤리팀장

전결 04/26
이태희

협조자

시행 정보윤리팀-891

(2007.04.26.) 접수

()

☎ 110-777

전화 02)750-1263

/전송 02)750-1537

/ 공개